



① 현행 유지
(별도조치 불필요)

- ※ 법률, 시행령, 국회규칙 등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
- ※ 법정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된 공부의 첨부, 제출, 확인을 요하는 경우

② 법률 등에 근거 마련

- ※ 관계부처에 의견제시, 해당 법률, 시행령, 국회규칙 등에 근거 마련(소관부처)

③ 대체수단 도입

- ※ 주민번호 삭제/ 생년월일, 등록번호, 회원번호, I-Pin 등으로 대체